

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

변경신고 수리번호		
신고인	법인(상호)명	비료생산업 등록번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변경신고 내용	변 경 전	변 경 후
변경사유		

「비료관리법」 제19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